

# 수입농림수산물 국내유통단계 원산지표시요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의 2(수출·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등)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농림수산물의 국내 유통단계 원산지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농림수산부고시 제94-5)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編輯人 宋景太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裴永斗  
 發行所  
 社團 韓國生藥協會  
 法人 <우편번호 130-0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電話 967-8133, 969-6875  
 FAX: 965-0643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 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電話 967-4984  
 電話 965-9551

## 명확한 원산지 표시 표기하여 공정 유통거래로 소비자보호

수입농림수산물 국내 유통단계 원산지표시요령

제1조(목적)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수입농림수산물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유통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의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요령의 의하면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원산지표시방법) ① 수입농림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요령을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농림수산물 그대로 유통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 관리세칙에서 정한 원산지표시방법에 의해 표시.

2. 통관된 후 재포장하여 유통

가. 원산지표시 활자크기

포장전면크기	활자크기
30cm이상×20cm이상 또는 600cm이상	38 point이상
15cm이상×10cm이상 또는 150cm이상	20 point이상
10cm이상×5cm이상 또는 50cm이상	12 point이상
10cm미만×5cm미만 또는 50cm미만	8 point이상

나. 위치: 포장전면 좌측 상단에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 색도: 포장지 바탕색과 구별할 수 있는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라. 표시방법  
 (1) 포장지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랩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스티커 부착도 예외적으로 허용  
 (2) 그물망 재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부착 허용

3. 통관된 후 재포장하지 않고 날개 또는 산물유통

가. 다음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표시

구분	표시방법	규격
날개판매	스티커 부착 (현품)	가로 3cm×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용기판매	용기에 표시 꽃말표시	가로 15cm×세로 10cm 이상 가로 15cm×세로 10cm, 높이 10cm 이상
산물거래	상품안내표시판 (판매장소)	가로 30cm×세로 50cm 이상
전열판매	안내표시판 (전열대)	가로 7cm×세로 5cm 이상

제4조(다량물품의 원산지표시) ① 합판의 원산지표시(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립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의 원산지표시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의 시하여야 한다.

제5조(다량물품 및 규정의 적용) 수입농림수산물의 국내 유통단계 원산지표시요령과 관련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원산지관리세칙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규를 준용한다.

제6조(시행) 이 요령은 199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년 1월 17일)

이 요령은 199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년 1월 17일)

이 요령은 199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수입농림수산물의 국내유통단계 원산지표시방법

구분	표시요령															
1. 통관된 상태 그대로 유통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 관리세칙에서 정한 원산지표시방법에 의해 표시.															
2. 통관된 후 재포장하여 유통	가. 원산지표시 활자크기 <table border="1"> <thead> <tr> <th>포장전면크기</th> <th>활자크기</th> </tr> </thead> <tbody> <tr> <td>30cm이상×20cm이상 또는 600cm이상</td> <td>38 point이상</td> </tr> <tr> <td>15cm이상×10cm이상 또는 150cm이상</td> <td>20 point이상</td> </tr> <tr> <td>10cm이상×5cm이상 또는 50cm이상</td> <td>12 point이상</td> </tr> <tr> <td>10cm미만×5cm미만 또는 50cm미만</td> <td>8 point이상</td> </tr> </tbody> </table> <p>나. 위치: 포장전면 좌측 상단에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 색도: 포장지 바탕색과 구별할 수 있는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라. 표시방법            (1) 포장지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랩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스티커 부착도 예외적으로 허용            (2) 그물망 재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부착 허용</p>	포장전면크기	활자크기	30cm이상×20cm이상 또는 600cm이상	38 point이상	15cm이상×10cm이상 또는 150cm이상	20 point이상	10cm이상×5cm이상 또는 50cm이상	12 point이상	10cm미만×5cm미만 또는 50cm미만	8 point이상					
포장전면크기	활자크기															
30cm이상×20cm이상 또는 600cm이상	38 point이상															
15cm이상×10cm이상 또는 150cm이상	20 point이상															
10cm이상×5cm이상 또는 50cm이상	12 point이상															
10cm미만×5cm미만 또는 50cm미만	8 point이상															
3. 통관된 후 재포장하지 않고 날개 또는 산물유통	가. 다음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표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표시방법</th> <th>규격</th> </tr> </thead> <tbody> <tr> <td>날개판매</td> <td>스티커 부착 (현품)</td> <td>가로 3cm×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td> </tr> <tr> <td>용기판매</td> <td>용기에 표시 꽃말표시</td> <td>가로 15cm×세로 10cm 이상 가로 15cm×세로 10cm, 높이 10cm 이상</td> </tr> <tr> <td>산물거래</td> <td>상품안내표시판 (판매장소)</td> <td>가로 30cm×세로 50cm 이상</td> </tr> <tr> <td>전열판매</td> <td>안내표시판 (전열대)</td> <td>가로 7cm×세로 5cm 이상</td> </tr> </tbody> </table>	구분	표시방법	규격	날개판매	스티커 부착 (현품)	가로 3cm×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용기판매	용기에 표시 꽃말표시	가로 15cm×세로 10cm 이상 가로 15cm×세로 10cm, 높이 10cm 이상	산물거래	상품안내표시판 (판매장소)	가로 30cm×세로 50cm 이상	전열판매	안내표시판 (전열대)	가로 7cm×세로 5cm 이상
구분	표시방법	규격														
날개판매	스티커 부착 (현품)	가로 3cm×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용기판매	용기에 표시 꽃말표시	가로 15cm×세로 10cm 이상 가로 15cm×세로 10cm, 높이 10cm 이상														
산물거래	상품안내표시판 (판매장소)	가로 30cm×세로 50cm 이상														
전열판매	안내표시판 (전열대)	가로 7cm×세로 5cm 이상														

또는 판매업자 수입농림수산물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원산지표시를 훼손 또는 변경한 무역업자, 무역대리업자 또는 판매업자

(2) 양벌규정(제70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영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 조의 벌칙을 부과한다. 농림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6조)  
 ○ 부과대상: 농림수산물 또는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부과권자: 농림수산물 장관, 서울특별시시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제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효력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부과권자에게 이의제기  
 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통보방법—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의 의한 과태료의 재판 ○과태료 미납: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2)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2조)  
 ○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농림수산물을 국산품으로 위장하여 판매 또는 국산품과 혼합하여 국산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자

조판국 『한국생약』 제178호 1994년 2월 20일

### 발 (祝) 展

법인 한국생약협회

강원도지부

지부장	박영임
사무소장	황인구
원주시	전승표
영월군	심호승
춘천시	허영완
평창군	이종렬
인제군	박건훈
홍천군	김시건
삼척시	김박이
양구군	강연연
삼척군	김환원
양양군	김환원
횡성군	김환원
속초시	김환원
동해시	김환원
정선군	김환원
화천군	김환원
태백시	김환원
도	김환원
정선군	김환원
태백시	김환원
평창군	김환원

1994년 2월 20일

공판장장

함우 최황 임김 조김 임 조 김 김 강 김 박 이 함 허 심 전  
 승대 윤 성 완 우 광 정 원 대 환 원 연 시 건 종 영 영 호 승  
 주 기 철 구 수 원 호 태 길 현 래 복 백 부 훈 렬 완 수 섭 표

(공판장장·겸직) (본부중앙이사)